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8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2월 2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를 다문화학생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다문화학생에 부합하지 않음.
- 또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아동 또는 학생을 교육지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, 이를 포함한 교육지원 대상자를 ‘다문화학생등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2호나목에 “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”을 삭제하고, 삭제된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재규정함.
- 조례 내용 중 “다문화학생” 문구를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일괄 정비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 “다문화학생” 이란” 을 “ “다문화학생등” 이란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3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각각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다문화 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각각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다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3조(다문화교육 기본계획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

아동을 말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
나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

다. <삭 제>

제3조(다문화교육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사업) (현행과 같음)

----.

가. (개정안과 같음)

나. <삭 제>

나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3조(다문화교육 기본계획) ①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제3조의2(사업) 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 1. (개정안과 같음)

육 사업
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
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
제4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다문화 특별학급)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

제4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다문화 특별학급) ① (현행과 같음)

2. 다문화학생등-----

3. 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

제4조(실태조사) ①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 ①

-----다문화학생등

제6조(다문화 특별학급) ① -----

다문화학생등-----

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(이하 “한국어예비학교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율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다문화교육지원센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 ①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) ①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자율학교 지정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다문화교육지원센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 ①-----
다문화학생등-----

제9조(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) ① ----- 다문화학생등

제10조(자율학교 지정·운영) ①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제11조(다문화교육지원센

터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·상담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
3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4.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터) ① 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다문화학생등-----

2. 다문화학생등-----

3. 다문화학생등-----

4.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다문화학생”을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다문화학생”이란”을 ““다문화학생등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의 자녀로서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”을 “사람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을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다문화학생”을 각각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다문화 학생”을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을 “다문화학생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다문화학생” 을 각각 “다문화학생등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<u>다문화학생</u>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문화학생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다문화학생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의 자녀로서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</u>을 말한다</p> <p>가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나. 「<u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</u>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다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다문화학생등</u>” ----- -----<u>사람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</u>-----.</p> <p>가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다문화가족의 구성원</u></p> <p><삭 제></p> <p>나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</p>

제3조(다문화교육 기본계획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
제4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다문화교육 기본계획) ①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3조의2(사업) 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다문화학생등-----
3. 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제4조(실태조사) ①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-----.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6조(다문화 특별학급)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(이하 “한국어예비학교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)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율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다문화 특별학급) ① -----
-----다문화학생
등-----
-----.

제7조(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) ①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9조(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) ① ----- 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10조(자율학교 지정·운영) ①-----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제11조(다문화교육지원센터) ① 교육감
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
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
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
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
다.

1.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·상담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
3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
스 정보제공 및 홍보
4.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
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(다문화교육지원센터) ① -----

-----다문화학생등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다문화학생등-----

2. 다문화학생등-----

3. 다문화학생등-----

4.-----다문화학생등-----
